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54589(본소), 2016나71652(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청구의 소 · 매매대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54589(본소), 2016나71652(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단10667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지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우혜정

피고, 항소인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우혜정

변론 종결 2016. 11. 3.

판결 선고 2016. 12.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단106673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23. 접수 제0066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1,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10. 1. 접수 제0005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며, 2014. 10. 1.부터 위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 1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E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각 전화통화

- 1) 원고는 2014. 9. 20.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F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4,990만 원으로 하여 매물로 등록하였다.
- 2) 원고는 2014. 9. 22. 11:00경 'G'이라고 이름을 밝힌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자신의 지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14:00경 "지인을 보낼 테니 매수인이 피고 B으로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 3)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4. 9. 22. 10:00경 E이 근무하는 매매상사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이에 전화를 받은 E이 "4,500만 원 가량 된다"고 이야기 하자, 이 사건 자동차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오후에 한번 방문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 1) E은 중고차 매매상인 피고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B과 함께 2014. 9. 22. 16:00경 원고를 찾아가서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하였다.
-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매수인 측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면 성명불상자가 이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E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가 있음을 알렸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으로 압류를 해제하고 다음 날이전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3) 원고는 같은 날 16:30경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냈고, '5분 후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후,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 열쇠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

4) E는 2014. 9. 2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4,57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18:00경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4,377만 원을 입금하였다.

5) 그러나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연락도 두절되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 등 이후의 사건 경위

1) 이에 원고는 성명불상자, E, 피고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기소중지되고, E, 피고 B은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 한편 피고 B은 2014. 9. 2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곧바로 2014. 10. 1.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3)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C, D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D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 D의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D의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2. 16.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인란에 피고 C, D의 이름이 있는 점, 위 항소장에 첨부된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에도 위임인으로 피고 C,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 D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법무법인 법여울이 제출한 이 사건 소송위임장에도 그 위임인에 피고 C, D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의 항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 B이나 E과 직접 협의한 바 없고, 매매대금에 관한 원고의 의사는 확정적으로 4,990만 원이었던 반면, 피고 B의 의사는 4,377만 원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매매대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협의할 권한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가사 성명불상자가 원고와 합의한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에 매도하는 것으로 피고 측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성명불상자와 매매대금에 대해서 협의하였을 뿐 E, 피고 B(이하 '매수인 측'이라고 한다)과는 매매대금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중고 자동차와 같이 실제 차량의 상태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 물건을 거래하면서, 직접 만나 차량을 확인한 매도인과 매수인 측 사이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각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점, ② 원고는 매수인 측에게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자신은 성명불상자와 내부적인 계산을 거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처럼 매수인 측에게 이야기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매수인 측과 직접 논의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매수인 측에게 의사를 전달하였다 하고, 매매대금의 입금도 이례적으로 매도인 명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 명의 계좌 앞으로 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일을 처리한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제1심 판결과 같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락을 말소하게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게 하는 것은 원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광

판사이미경

판사김근홍

별지